

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
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601조 제1항 제1호, 제3호 내지 제7호, 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」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을 공고합니다.

2026. 6. 1.

법원행정처장

1 위촉자격
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601조 제1항 제1호,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.

2 위촉구분

개인회생사건의 전임회생위원

3 위촉예정인원

· 대전회생법원 ○명

※ 위촉예정인원은 해당법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4 제출서류

- 가. 지원서(사진 부착) 1부
- 나. 자격증명서(변호사, 법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) 1부
- 다.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- 라. 학위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1부
- 마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5 근무조건

- 가. 위촉 기간: **2년**(위촉기간 만료 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위촉 가능)
- 나. 업무 내용: **근무법원에서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으로 선임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.**
- 다. 근무 형태: **청사 상근 방식**
- 라. 보수 등: 개별 사건별로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.
- 마. 겸직제한: **전임회생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(단,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회생법원에 계속중인 개인파산 사건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).**
- 바. 서약서 등 제출: 전임회생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개인회생사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, 전임회생위원 업무수행 시 준수할 사항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6 위촉일정

- 가. 지원서 접수기간: **2026. 6. 8.(월) ~ 6. 19.(금)**
 - 나.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통지: **2026. 7. 중순경**
 - 다. 면접 예정일: **2026. 7. 28.(화)**
 - 라. 최종 위촉대상자 통지: **2026. 8. 초순경**
 - 마. 전임회생위원 위촉: **2026. 9. 중순경**
- ※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7 지원서 교부와 접수

- 가. 지원서 교부: 접수기간 내에, **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** "대국민 서비스 - 새소식 -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" 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- 나. **접수기간: 2026. 6. 8.(월) ~ 6. 19.(금)**
 ※ 업무시간(09:00 ~ 18:00)중에 한하고,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.
- 다. 접수처: **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담당실 (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본관 502호)**
- 라. 제출방법: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 ※ 우편접수 시 봉투 겉면에 **'대전회생법원 전임회생위원 지원 서류 재증'** 이라고 기재

하시기 바랍니다.

8

기타사항

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담당실(전화: 02-3480-7710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